

〈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〉

2020학년도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

구분	상세 내용
관련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칙시행세칙 제22조의2(학점이월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(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) 이상인 경우 연간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잔여학점을 3학점까지 2학기이월할 수 있다. ②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3항에 따른 초과 신청 가능 학점은 이월 학점보다 우선 적용하며, 이월 학점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. ③ 학점 이월의 제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학기 수강포기학점 2. 성적우수학생에게 부여한 추가학점 3.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목
수강신청 학점이월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용대상 :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(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) 이상인 재학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성적우수 추가학점 및 수강제한학점 미포함과목 제외 • 적용시기 :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2020학년도 2학기에 적용 • 이월학점 범위 : 최대 3학점까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학기 이월학점을 2학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됨(※ 재이월 불가) • 이월학점 제외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학기 수강포기학점 (※2020-1학기만 한시적으로 이월학점에 포함. 단, 전체 수강포기학점이 이월되는 것은 아님) * 1학기 수강신청학점 산출 시 성적우수 추가학점/수강제한학점 미포함과목/수강포기학점을 제외한 수강신청학점으로 반영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전학기 성적우수(3.7/4.30이상) 추가학점(3학점) : 수강신청 시 먼저 소진 - 수강제한학점 미포함 과목 : 사회봉사, 교육봉사, 취업설계, 진로탐색교수멘토링 (구 멘토프로그램), 군사학 과목은 수강가능학점 초과하여도 수강신청 가능

□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예시 (16학번 이후)

소속	수강기준학점		1학기		2학기			이월 효과	2020학년도
	최저 수강학점	최대 수강학점	수강가능 학점	수강신청학점 (수강포기후)	이월 학점	기존 수강가능학점	최종 수강가능학점		연간 수강가능학점
공통	9	19	17	15	2	19	21	+2	36
				16	1		20	+1	
			19	17	2	17	19	동일	
				18	1		18		
19	0	17							
교육학부 및 약대	9	26	24	20	3	26	29	+3	50
				21	3		29	+3	
				22	2		28	+2	
				23	1		27	+1	
			26	24	2	24	26	동일	
				25	1		25		
				26	0		24		